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가합55632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0423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가합55632 판결

전 문

원고1. A

2. B

피고C

변론 종결 2015. 6. 10.

판결 선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0. 3.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8,602,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7. 30. 사망하였는데, 망인 사망 당시 처 E과 딸인 원고 A, 원고 B, F, G, 아들인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 기재의 순번 1 내지 10의 각 부동산(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1. 28. 순번 2 내지 9의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2002. 1.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2008.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소유
2-1	H	포천시 H 답 1924m ² (2011. 8. 5. 분할)	2002. 1. 31. 망인 증여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경기도)
2-2	I			
2-3	J			
3-1	K	포천시 K 답 1878m ² (2011. 8. 5. 분할)	2002. 1. 31. 망인 증여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경기도)
3-2	L			
3-3	M			
4-1	N	포천시 N 답 2063m ² (2011. 8. 5. 분할)	2002. 1. 31. 망인 증여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경기도)
4-2	O			
4-3	P			
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2008.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소유
7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8-1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포천시 Q 전 1722m ² (2011. 8. 5. 분할)	2002. 1. 31. 망인 증여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경기도)
8-2	R			
9-1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포천시 S 전 9289m ² (2014. 7. 25. 분할)	2002. 1. 31. 망인 증여	2014. 7. 2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대한민국)
9-2	T			
9-3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10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2008. 10.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소유

다.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과 F, G(이하 '피고의 누나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위 나.항 기재 표 순번 1, 10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0. 3. 14. 피고의 누나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2면에는 '증여 및 상속 부동산 목록 확인서'의 부동산목록으로 위 나.항 기재 표의 순번 1 내지 10 부동산이 각 기재되어 있다.

상기 본인은 부친(U)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모든 부동산을 본인 1인 명의로 대표하여 등기하였던 사실을 확약하며,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 유지할 것임을 확약한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 근저당설정, 보증 및 양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등기할 당시의 상태가 아닌 상태로 변경될 시에는 본인의 지분은 해당건에 대하여 50%, 나머지 50%는 형제들의 공동지분으로 명의 변경할 것임을 확약한다.

단, 본 부동산 중 일부분이 도로 건설로 인해 수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을 본인을 포함한 어머니와 형제들이 균등하게 분할, 취득하기로 한다.

마. 피고는 2011. 8. 5.경 위 나.항 기재 표 순번 2, 3, 4, 8-2 부동산이 경기도에 수용되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의 누나들에게 실수령 토지수용보상금의 1/6인 57,711,758원씩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위 나.항 기재 표 순번 9-2 부동산이 2014. 7. 25. 대한민국에 수용되자 2014. 8. 8. 토지수용보상금 1,210,701,330원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290,081,078원 및 지방소득세 29,008,107원 합계 319,089,185원의 세금을 신고하였다.

사. 망인으로부터 원고 B는 2003. 1. 30., 원고 A는 2005. 10. 10. 각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누나들과 2010. 3. 14.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2011. 8. 5.경 1.의 나.항 기재 표 순번 2, 3, 4, 8-2의 부동산이 경기도에 수용되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의 누나들에게 실수령 토지수용보상금의 1/6 상당인 57,711,758원씩 지급하였으나, 순번 9-2 부동산이 수용되어 약 9억 원 가량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실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순번 9-2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중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 토지수용보상금의 1/6 각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정서 기재 각 부동산 중 경기도 또는 대한민국에 수용되고 남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8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누나들과 사이에, 1.의 나.항 기재 표 순번 1 내지 10 부동산이 매각 등 기타 사유로 등기할 당시와 다른 상태로 변경될 경우 피고의 누나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8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 중 수용되는 부분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피고와 E, 피고의 누나들 6인이 균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약정 이후 순번 2, 3, 4, 8-2, 9-2 부동산이 수용되어 위 각 부동산의 현황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수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8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순번 9-2 부동산의 실수령 토지수용보상금 중 원고들의 몫인 각

148,602,024원{= (순번 9-2 부동산 토지수용보상금 1,210,701,330원 - 세금 319,089,185원) / 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착오로 인한 취소

(1) 주장 피고의 누나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상속재산의 정리와 관련하여 각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이러한 피고의 누나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 여부는 이 사건 약정에서 중요한 사항이고 이 사건 약정서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항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누나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지 않았다고 잘못 알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1. 8.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2)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각 3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또한 망인으로부터 2003. 1. 27.경부터 2007. 2. 16.경까지 합계 19,550,000원을 송금받은 점, 원고들에 대한 금원의 송금 시기,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중 위 금원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약정 후 그 내용 중 일부를 임의이행한 점 등 이 사건 약정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상속재산의 정리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든 사정,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원고들의 유류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송금받은 금액이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망인 생전의 재산 증여 경위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E에게 문의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하여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와 같이 착오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에 의한 취소

(1) 주장 피고의 누나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상속재산의 정리와 관련하여 각 3천만 원을 증여받았던 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제3면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 내지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고유재산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세금 문제 때문에 등기만 피고 명의로 했을 뿐 자신들의 몫도 포함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들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기망으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6. 9.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2) 판단 전항에서 고려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원고들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0. 3.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각 148,602,02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순번 9-2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병룡

판사박은희

판사구자광

별지